

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2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2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2. 13

(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 영 열

나. 제안이유

-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급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화순읍 앵남리 등 23개 행정리를 통합하도록 하는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. 2. 15 공포되어 약 10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15호 이하의 법정리와 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장정원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운영상 행정리와 법정리의 형평성을 고려함 (안 제1조)
- 행정운영상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(안 제2조 제1항)
- 이장정원의 변동사항은 매년 12월 31일 세대수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세대수를 산출 적용한다 (안 제2조 제2항)
-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분구는 분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 군의회와 협의 후 현지조사 분구할 수 있다. (안 제2조 제2항)
- 이장의 정수의 관할구역 공표는 매년 1월 5일 공표한다. (안 제3조)
- 화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다. 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-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가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행정리를 15호 이하는 이장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5호 이하인 법정리와 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 입법 조례안으로서,
- 이장정원조례를 폐지하고 이장정원기준조례안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이장정수를 공표하여 행정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기준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기준) 행정리의 정원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행정운영상 리는 1-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15세대 이상으로 한다.

②이장정원의 변동사항은 매년 12월 31일 세대수 기준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세대수를 산출 적용한다.

단,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분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구할 수 있다.

제3조(이장성원 및 관할구역 공표)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“별표1”의 서식에 의거 매년 1월 5일까지 공표한다.

제4조(공표방법) 화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화순군이장정원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